

스웨덴의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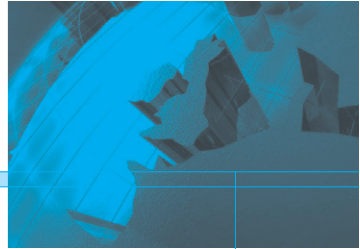
서구 선진국가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일정 유형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정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정책 유형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독일과 이태리와 같이 일인생계부양 가정이 독려되는 국가에서는 조세 체계나 가족 지원 정책이 부부 중의 한사람-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가사 일을 분담하는 것을 독려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이 이인생계부양가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조세체계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부모 모두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스웨덴 가족 정책의 목적은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부의 재분배와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아동의 평등권과 복지증진이라는 목표하에 정책 입안자들은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이 매일 매일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가족 정책은 양성 평등과 아동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력히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 가족 지원 정책의 표면적인 목적은 출산률 증가라기보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사회 보험 형태로 지원되는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인 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은 국립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RfV)과 지역 사회보험 사무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스웨덴 가족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표방된 목적 중의 하나는 가사일과 육아에 있어



남녀 모두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데 있다. 1960년대 복지 정책과 부의 재분배 정책이 확장될 무렵, 스웨덴의 가족 정책이 남자가 노동 시장에서 근로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일인생계부양가정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남녀 모두 노동 시장과 가사·육아에 있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인생계부양가정을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이인생계부양가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인생계부양가정을 지지하는 정책이 가정을 경제적 유기체로 변질되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양육과 육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가족내에서 수행하던 일들이 정부의 일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스웨덴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성 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인생계부양자 모형이 지지를 받았으며, 1970년대 동안 이러한 철학을 지지하는 많은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인생계부양자 모형은 이분적인 조세제도, 육아지원 시설의 확대,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에 의해 현실화 되었다. 이분적인 조세제도는 1970년대 초에 도입되었는데, 개인 소득이 각각 분리되어 과세되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

1974년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는 소득과 연계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출산과 더불어 휴직 기간을 갖고 다시 같은 직장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직업

을 갖도록 하는 것을 더욱 촉진하였다.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은 부모로 하여금 육아와 직장생활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육아 휴직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휴직 기간으로 6개월을 보장해 주었다. 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 경력에 있어 과도한 단절을 가져 온다고 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짧은 휴직 기간은 오히려 취약한 근로 활동과 승진 기회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야기 하였다.

스웨덴 가족 정책이 발달함에 따라 양육 및 노인 보호와 같이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수행되던 일들이 아웃소싱되었다. 그 결과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 근로할 수 있게 되었고, 보육과 노인 요양과 같이 전통적으로 가정내에서 수행하던 일들에 대한 노동 수요가 증가 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전에는 가정 내에서 수행하던 일들이 현재 대부분 공공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는 보육 시설이 확보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보육 시설의 확충은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모가 직장을 갖기를 더욱 쉽게 하였다. 오늘날 만큼 보육 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1970년대에 보육은 대부분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1995년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이 요구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졌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출산률 증가는 1990년대 육아 일일 보호 센터(day-care center)의 증가를 가져왔다. 1998년 이후 육아 지

원 시설 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산률의 감소와 더불어 취학전수업이 도입된 이래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법이 1917년 통과 되었다. 1930년대 부터 아버지가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양육비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스웨덴 사회 정책이 자녀의 재정적인 복지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초기 형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재정적인 책임은 오랜 기간 정책의 한 부분이었지만 자녀의 권리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육아 휴직 정책이 도입되고 나서 아버지들은 육아 휴직 기간의 50%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 받았다. 이것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부모간의 평등성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가 양부모를 만나고 함께 지낼 시간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바 있다.

스웨덴에서 남성은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책임이 있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그러하다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가사와 양육과 함께 가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만족감 역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스웨덴에서 남성들이 양육에 사용하는 노력과 시간의 증가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스웨덴의 정책 사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남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해서 여성이 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2.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스웨덴 가족 지원 정책은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소득조사(means-tested) 혹은 욕구조사(needs-tested) 수당 세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주거지 연관된 급여(residence-related benefit)와 노동 연관된 급여(work-related benefit)로 구분된다. 주거지 연관된 급여는 수급자가 스웨덴에 거주한다는 조건하에 지급하는 급여이며, 노동 연관된 급여는 수급자가 스웨덴에서 근로한다는 조건하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스웨덴의 가족 지원 정책은 가정에 자녀가 없는 시기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 등 생애 주기별로 재원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소득 이전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자녀가

적은 가정에서 자녀가 많은 가정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수당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정 거의 모두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다. 아동 수당 정책은 1948년에 도입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그리고 적은 수의 자녀를 둔 가정과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가정 사이에서 재원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재정적으로 보상하려는 정책이다. 육아 휴직 급여의 목적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4년 이래 점차로 변화되어 왔다.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여성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남녀평등을 증진시키며, 부모 중 한 사람이 가정에 남아 자녀를 돌봄으로써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최근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가 50%씩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육아 휴직 신청자 중 85%를 여성이 그리고 15%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모두로부터 양육을 받을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병간휴휴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혹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잠시 머무르는 부모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에게 집에 머무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보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도우미(child-carers)의 수를 증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 도우미는

가정으로 파견되어 근로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를 도와 자녀를 돌보아 주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데는 부모가 최상이라는 의견이 주장되어 오늘날 병간휴휴가 정책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병간휴 휴가에 대한 권리는 제 3자에게 이전될 수 있어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그만 둔 사람은 병간휴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출산급부는 임신 중에 태아에게 위협한 작업을 함으로써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정책이다. 임신출산급부는 태아에게 위협한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특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노동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임신출산급부를 받는 여성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 머무르지만, 임신출산급부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대신에 병가수당(sickness cash benefit) 혹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 임신출산급부는 임신 중에 직장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임신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임신한 여성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단일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임신 말기 모든 여성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보상 제도 마련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주거 수당은 소득 조사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지급하는 수당제도이다. 주거 수당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기본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표준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한다는 두가지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인 목적은 빈곤한 가정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표준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주거 수당은 주거 정책과 가족 정책을 혼합한 차원에서 주거 비용에 대한 수당인 동시에 자녀에 대한 수당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60%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지원을 하는데, 상호간에 이혼 합의를 보지 못한 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책정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은 한부모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혼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재정적 안정성이 위협 받을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도 있다. 수급 자격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결정된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한 한부모가족수당을 모두 되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은 자녀의 양육비를 전 배우자가 지불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성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동보호수당(care allowance), 보조자 수당(assistance allowance), 차 수당(car allowance)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만성질병 혹은 장애아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하여 노동을 할 기회가 부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를 가진 여성은 더 많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를 가진 한부모는 실업자일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병가휴가와 영구적인 장애연금수당자로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지출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 수당, 육아휴직급여, 병간호휴가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급여 비용 및 행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가족 및 아동 수당 제도 (Child and family benefit)

① 아동 수당 (Child allowance)

스웨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가족 및 아동 수당 제도 중 아동 수당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수당의 종류는 기본아동수당(basic child allowance),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 다자녀 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의 세 종류가 있다. 모든 부모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달부터 혹은 스웨덴에 이주한 달부터 자녀의 연령이 16세에 이르는 분기까지 기본아동수당을

표 1.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유형	내용
보편적 수당	- 아동 수당(general child allowance) ※ 다자녀 가족 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 입양 수당(cost-of-adoption allowance) 포함
사회보험	- 육아 휴직 급여(parental cash benefit) - 병간호휴가(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 아동연금(child pension) - 임신출산급여(pregnancy cash benefit) - 보육기간 연금권(pension right for childcare years)
소득조사 혹은 육구조사 수당	- 한부모가족지원(maintenance support) -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 아동보호수당(care allowance)

자료: 스웨덴국립사회보험청(2007)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Annual Report 2006"

표 2.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지출한 비용 (2004~2006)

(단위: 크로나)

구 분	2004	2005	2006
사회보험	28,580	29,504	31,570
소득조사 혹은 육구조사 수당	10,017	10,024	10,272
보편적 수당	20,907	21,495	23,653
합계	59,505	61,022	65,495
행정비용	1,835	2,001	2,249
총비용	61,340	63,023	67,744

주: ①사회보험: 육아휴직급여, 병간호휴가, 아동연금, 임신출산급여, 보육기간연금권 ②소득조사 혹은 육구조사 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주거수당, 아동보호수당, ③보편적수당: 아동수당, 다자녀가족보조금, 입양수당
자료: 스웨덴국립사회보험청(2007)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Annual Report 2006"

받을 수 있다. 수당액은 매월 20일까지 지급된다. 자녀의 연령이 16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연장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다면 다가족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공동 법적 보호자인 부모는 부모 중 누구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한부모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일 경우, 아동 수당은 법적 보호자인 한부모에게 지급된다.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부부가 서로 결혼한 상태라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녀의 공동 법적 보호자가 된다.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자녀의 공동 법적 보호자이며 부모권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복지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추후에 세무서에도 알려야 한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보험청이 이 부모가 자녀를 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특별한 경우에 아동 수당은 부모가 아닌 제 3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에게 특별히 지정된 보호자가 있는 경우나, 아이를 맡아 기르는 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6세 이후 자녀가 상위 2차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National Board of Student Aid가 교육수당(study allowance)을 지급한다. 한편 16세 이후에도 자녀가 의무 교육 기관 혹은 정신지체아동의 의무 교육 기관에 계속 다니는 경우 연장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지원 절차 없이 수당이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최소한 2명의 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부모는 자동적으로 다자녀 가족 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급받는다. 자녀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사회 보험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자녀의 나이가 20세 되는 6월까지 지급된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함, ② 16세 이상인 경우, 상위 2차 학교, 의무 교육 기관, 장애 아동을 위한 의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어야 함, ③ 자녀가 미혼 상태이어야 함. 한편,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임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녀 2명 이상을 가지고 있고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결혼한 상태의 부부, 이혼 혹은 별거한 부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함께 낳은 경우 모두 지급 대상이 된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급 예시 1>

John과 Emma는 재혼한 부부이다. John은 이전 부인 사이에서 Avid와 Beta 두 명의 자녀를 갖고 있다. Emma는 이전 남편 사이에서 Cissi라는 자녀를 갖고 있다. John은 Avid와 Beta에 대해 월 100 크로나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Emma는 자녀가 한 명인 이유로 다자녀 가족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다. 재혼 후에 부부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신청하여, Avid, Beta, Cissi 세 자녀에 대해 월 454 크로나에 해당되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John과 Emma는 두 부부 중 누가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지급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급 예시 2>

Brian은 Anna와 결혼하고 Tom을 낳았다. Tom에 대한 아동수당은 Anna가 받고 있다. 두 부부는 두 번째 자녀인 Jenny를 낳았다. 부부는 Jenny에 대한 아동 수당을 Brian이 받도록 결정하였다. 아동 수당이 각기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되

기 때문에 이 부부가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자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년 8월 현재 스웨덴에서 지급하고 있는 아동 수당 및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급액수는 아래의 표를 보면,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원액이 받고 있는 아동수당 지원액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부모는 아동수당을 나누어서 각자 받을 수 있는데, 아동 수당을 나누어서 각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부부가 서로 50%씩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 ② 부부가 함께 살아서는 안된다. ③ 부부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 법적 보호자라야 한다. ④ 아동수당을 각자 나누어 받을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부부가 아동 수당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1자녀에 대하여 각각 525 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을 부부가 각자 나누어 받는 경우,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부부사이에 나누어 지급될 수 없으나, 부부가 각자 얼마나 받을지 재정되어야 한다. 아동 수당액을 나누어 지급 받기 전에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100크로나를 받은 경우, 아동 수당액을 나누어 받는다고 해서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50크로나씩 부부가 나누어 받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지급받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아동 수당액을 지급 받는 자녀 몇 명을 각각의 부모가 양육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두 자녀 가정에 지불되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100 크로나 이다. 이것을 자녀 1명당으로 계산하면 50 크로나 이고, 이를 부부가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하면 각기 25 크로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에 대한 아동 수당을 부부가 공유해서 갖는 경우,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25크로나 × 2명=50 크로나를 받게 된다.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부부간에 공유하여 받고, 나머지 한 자녀에 대해서는 온전히 받는 경우,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76크로나 × 2명) + (151크

표 3. 스웨덴의 아동 수당 및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원금액(2007년 8월 현재)

(단위: 크로나)

자녀수	아동 수당액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	총 급여액
1	1,050	-	1,050
2	2,100	100	2,200
3	3,150	454	3,604
4	4,200	1,314	5,514
5	5,250	2,364	7,614

주: 자녀수는 아동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함.
 자료: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alder/>

표 4. 스웨덴의 부부 공유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2007년 8월 현재)
(단위: 크로나)

자녀수	자녀 1명당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	부부가 공유하는 자녀 1명당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
1	-	-
2	100/2=50	50/2=25
3	454/3=151	151/2=76
4	1314/4=329	329/2=165
5	2364/5=473	473/2=237

자료: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alder/>

로나 × 1명) = 303 크로나를 받게 된다. 교육 수당도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동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아동 수당 공유 예시 1]

◎ 부부가 나누어 받기 이전

이혼한 부모인 Christina와 Mattias는 Filip을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다. Christina는 Filip에 대한 아동 수당 1,050 크로나를 받고 있다. Mattias는 재혼한 부인 사이에서 Elin이라는 딸을 두고 있으며, Elin에 대하여 온전한 아동 수당 1,050 크로나를 받고 있다. Christina와 Mattias 모두 한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

◎ 부부가 나누어 받은 이후

Christina와 Mattias는 Filip에 대한 아동수당을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였다. Christina는 Filip에 대

한 공유된 아동 수당으로서 525 크로나를 받게 되었으며,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아동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Mattias는 Filip에 대하여 공유된 아동수당 525 크로나를 받으며, Elin에 대하여 온전한 아동수당 1,050 크로나를 받는다. Mattias는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Filip에 대한 다자녀 가족 보조금 25 크로나와 Elin에 대한 다자녀 가족 보조금 50 크로나를 합쳐 75 크로나를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받는다.

[아동 수당 공유 예시 2]

◎ 부부가 나누어 받기 이전

이혼한 부부인 Sophia와 Gustav는 William과 Moa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다. Sophia는 William과 Moa에 대한 온전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Kalle에 대해서도 온전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Sophia는 세명의 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 3,150 크로나를 받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 보조금 454 크로나를 받고 있다.

◎ 부부가 나누어 받은 이후

아동수당을 Sophia와 Gustav가 나누어 받기로 합의한 후, Sophia는 William과 Moa에 대해

공유된 아동수당 525크로나×2명 = 1,050 크로나와 Kalle에 대해 온전한 아동수당 1,050 크로나를 받게 되었다. (총 2,100 크로나). 세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Sophia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William과 Moa에 대해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76 크로나×2명 = 152 크로나와 Kalle에 대한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151 크로나를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총 303 크로나를 받게 된다. Gustav는 Sophia는 William과 Moa에 대한 공유된 아동수당 525크로나×2명 = 1,050 크로나를 받으며, 다자녀 가족 보조금으로 25크로나×2명 = 50 크로나를 받게 된다.

② 아동 보호 수당 (Care allowance)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볼 경우 부모는 아동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수당 지급 조건은 16세 이하의 자녀가 질병, 학습장애, 기타 기능적 장애로 인해 최소 6개월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자녀의 질병 혹은 기능적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경우이다. 만일 부모가 질병을 가진 혹은 장애가 있는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보호수당은 이러한 자녀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의 총합계에 준하여 지급된다.

아동보호수당은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지급이 가능하다. 아동보호수당은 자녀가 장애수당을 받게 되는 19세 6월 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자녀가 일시적으로 병원 혹은 다른 기관에서 보

호받고 있는 경우 아동보호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심각하게 아플 경우, 아동보호수당을 여기에서 6개월 더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가 원하는 경우 아동보호수당은 부부 모두에게 나누어서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는 모두 자녀의 공동 양육자이어야 하며, 자녀의 보호에 공동으로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수당은 부모가 아픈 자녀를 특별하게 돌보는 노동에 대한 댓가이며, 자녀의 질병과 장애에 수발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아동보호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며, 연금 산정 시 적용되지만 질병 수혜금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고 있다.

아동보호수당은 일시금, 혹은 1/3, 1/2, 1/4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다. 가정 내에 장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총 보호 노력과 총 비용이 모두 합산되어 고려된다. 자녀를 개별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보호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합산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는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아픈 자녀를 돌보고 있고 한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지급되는 수당과 비교하여 너무 클 경우, 아동보호수당액에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현재 아동보호수당의 최대 한도액은 월당 8,396 크로나이며 최소액은 최대 한도액의 1/4인 월당 2,099 크로나이다.

자녀를 병원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 휴일에 집에서 부모가 일시적으로 직접 돌볼 때 부모는 돌보는 날수에 대하여 휴일자녀보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자녀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3개월 동안 적어도 10일 (연속적이지 않아도 됨)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함, ② 3개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연속적으로 적어도 10일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야 함. 휴일자녀 보호수당액은 일당으로 하여 월 아동보호수당액의 1/30이 지급된다. 공공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수당이 지급된다.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는 아동보호수당의 일부를 자녀 사망일부터 8개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 아동의 부모는 특별한 경우 장애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데 차량이 필요할 때 차량 지원(car support)을 받을 수 있다.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모는 특별한 경우 보조수당(assistance allowance) 및 병간호후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아동 연금 (Child pension)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속 학교에 다니거나 연장아동수당 혹은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20세가 되는해의 6월까지 아동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연금에서 지급되는 아동연금 급여액은 사망한 부모에 대한 기본 연금 금액의 25%가 지급된다. 2002년의 경우 월 790 크로나(원화로 약 114,000원)가 지급되고 있다. 보조적인 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아

동연금 급여액은 사망한 부모에 대한 보조적인 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다. 자녀가 형제가 있는 경우 각 형제 당 20% 추가해서 지급된다. 아동연금 지급액은 형제들 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지급된다. 기본연금과 보조적인 연금을 합하여 아동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총 아동연금 지급액은 2002년에 월 1,2000 크로나(원화로 172,8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한부모가족지원 (Maintenance Support)

한부모가족지원은 이혼한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 양육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부부 양방의 이혼 합의 혹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녀 지원 필요 정도와 부모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양육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사회보험청이 자녀를 공식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한부모가족지원을 지급한다.

- ①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 ② 합의된 양육비용이 월 1,173 크로나 이하일 경우, ③ 부모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 ④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아동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⑤ 한부모가 자녀를 입양하였을 때 이다.

사회보험청이 한부모가족지원을 지급하였을 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제공된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갚아야 한다. 되갚아야 하는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된다.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은 보조적인 수당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

한달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액은 1자녀 당 월 1,173 크로나(원화로 168,912원)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를 때 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어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연장된 한부모가족지원이 자녀 연령이 20세가 된 6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은 반드시 스웨덴에 거주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은 주소지가 배우자 중 일방 혹은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

⑤ 주거수당 (Housing allowance)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는 없지만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 가정에 대해 주거 수당이 지급된다. 주거 수당 액수는 주택의 크기, 주거비용,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우자 중 한쪽 일방의 소득이 연간 58,500 크로나 혹은 월 소득이 5,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감소한다. 한부모가정일 경

우 연간 소득이 117,000 크로나 이상 혹은 월 소득이 10,000 크로나 이상인 경우 주거 수당 액수는 감소한다.

표 5. 스웨덴의 주거수당 급여액 (2001년 1월 현재)

구분	월 최대 급여액 (크로나)	최대 주거지 넓이(m ²)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수	80
	1명	100
	2명	120
	3명	140
자녀가 없는 가정 (부부연령 18~28세)	4명	160
		60

자료: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2003)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 휴직관련 급여

① 육아 휴직 (Parental cash benefit for the birth of a child)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근로를 포기할 경우 육아 휴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육아 휴직 급여는 2002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480일 동안 주어지며, 200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450일 동안 주어진다.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 240일씩 동등하게 나누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부 중 일방이 각자에게 주어진 240일의 육아 휴직일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200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적어도

30일을, 2002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적어도 60일을 육아 휴직 기간으로 가져야 한다. 한 부모의 경우, 480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 60일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부모 훈련과 연계하여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자녀가 8살에 이르기 까지 혹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직일은 하루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1/3일, 1/2일, 1/4일, 1/8일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급여도 이에 준하여 지급한다. 1998년부터 휴직 급여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월 19,000 크로나이다 (원화로 약 2백7십만원).

② 병간호휴가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아픈 자녀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경우 병간호휴가가 주어진다. 병간호휴가는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자녀 나이 16세까지 대상이 된다. 병간호휴가에 따른 현금 급여는 자녀 당 연간 60일 동안 지급된다. 병간호휴가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경우 부모 대신에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제 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특정한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Act on Support and Service의 적용을 받는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16세 이후 21세가 될 때까지도 병간호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15세 이하이면서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Act on Support and Service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자녀당 연간 10일 (contact day)의 병간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일은 하루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1/3일, 1/2일, 1/4일, 1/8일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급여도 이에 준하여 지급한다. 병간호휴직급여로 1997년에는 소득의 75%를 지급하였으나, 1998년부터 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③ 아버지 휴가 (Paternity leave)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였을 때 아버지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01년 7월부터 특정한 경우 아버지 대신에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버지 휴가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후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998년 1월부터 아버지 휴가의 급여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④ 임신출산급부 (Pregnancy cash benefit)

임신출산급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임신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임신 중에 하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계속 일 할 수 없거나, Work Environment Act에 따라 업무를 일시적으로 그만 두었을 때, 임신부는 본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관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업무를

재배치해 줄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임신출산급부를 받을 수 있다 ①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의 1/4이 감소하였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일을 하는 경우, ② 작업 환경이 위험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경우, 임신출산급부로서 임신부는 출산 예정일 최소 2달 이전에 최대 50일에 대하여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Work Environment Act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을 할 수 없게 된 날에 대하여 임신출산급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 10일 전에 대해서는 임신출산급부를 받을 수 없다. 부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임신출산급부를 노동 시간에 준하여 부분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부터 급여액으로 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달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19,000크로나이다.

3. 생애 주기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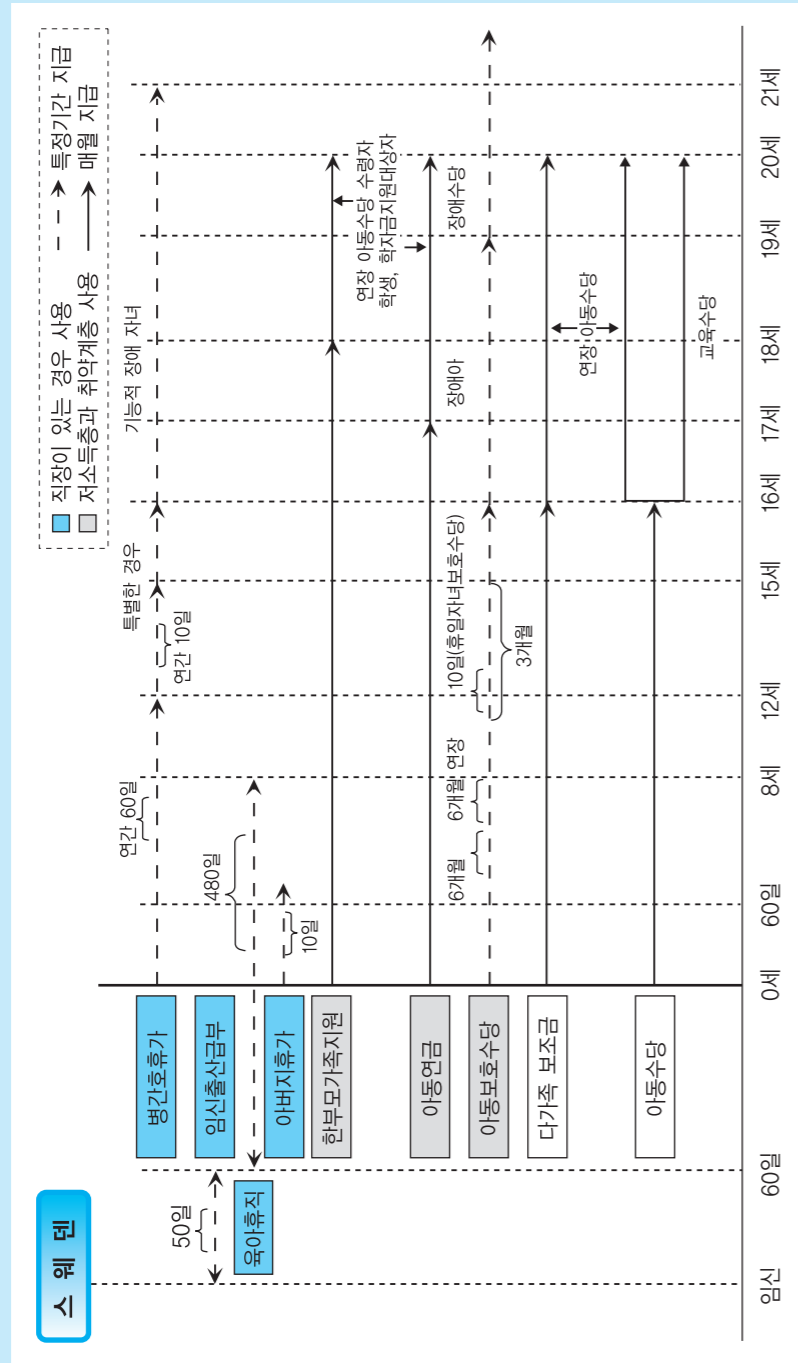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여성이 임신한 시점부터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때 까지 스웨덴의 어떠한 정책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각 정책간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아동 수당과 육아 휴직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면서 취약 계층 혹은 다자녀 가정 등 특별한 경우에 적

용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즉, 보편적인 수당으로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2자녀 이상인 경우 다가족수당을, 부모 모두 혹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 연금을,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 지원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가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아동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수당들은 중복적인 측면이 없어 아동수당을 받는 상태에서 다른 수당들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동수당, 다자녀 가족 보조금, 아동보호수당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 출생 시점부터 자녀의 의무 교육 기간이 끝나는 연령인 16세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자녀가 16세 이후에도 의무 교육기관을 다닌다든지 혹은 정신신체아동의 의무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자 연장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20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자녀가 16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만기가 되더라도 상위 2차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교육수당을 자녀가 20세 되는 해 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당은 의무교육 기간은 끝났지만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 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수당은 일반적인 경우 16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19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장애 수당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웨덴은 자녀가 부모의 부양하에 있을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아동연금 및 한부모가족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간도 아동 수당보다 조금 더 길다. 아동연금은 자녀가 17세 될 때까지 지급되며 한부모가족지원은 자녀가 18세 될 때 까지 지급된다. 이후에는 연장이동수당대상자, 학생, 혹은 학자금을 지원 받고있는 자녀에 한해 20세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종합컨대 자녀에 대한 모든 수당들은 특별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자녀 연령 20세까지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수당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정책인 반면, 육아휴직, 아버지휴가, 임신출산급부, 병간호휴가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원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육아 휴직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책이 지원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 출생 60일 전부터 자녀의 연령이 8세가 될 때 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임신부터 자녀 출생 60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임신부에 대해 50일간의 임신출산급부를 지급한다.

기간 상으로 보았을 때 임신출산급부와 육아휴직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설계되어 있어 자격이 되는 한 두 가지 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녀 출산 이후 자녀 연령이 12세 될 때까지 아픈 자녀로 인해 직장을 잠시 그만 둘 경우 병간호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 16세까지 그리고 자녀가 기능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21세 될 때 까지 병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GSST](#)